

# 고성군 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( 의안번호 제525호 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
산업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1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2. 12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2. 21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제안사유

-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일괄적인 청문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, 법에 근거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의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역안에 거주지 제한을 폐지함.  
(안 제8조 제1항)
-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정비  
(안 제27조)
-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 제2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(1996.9.20)의 규정 중 일부 불부합되는 용어와 요건 등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

○ 개정을 요하는 주요 골자는

-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역안에 거주자로 된 것을 제한을 폐지하는 것(안 제8조제1항)
-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"청문"용어를 의견진술로(안 제27조)
-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의견진술로 한다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므로써 군민의 권익에 피해는 없는 것인지
- 답 : 용어의 수정을 가하는 것일뿐 군민의 권익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피해는 없음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1998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